

case
5

글리신

요약

사례명	글리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0424 (2024.09.10.)
사실관계	중국산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를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수용액에 한국산 염산을 첨가하여 산성화되며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글리신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글리신은 산성화되며 발생하는 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별개의 화학물질로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또는 염산과 CAS 번호가 다르며 명칭, 성질, 용도가 변화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산성화 등의 공정을 수행한 한국을 원산지로 판정함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⁴⁾

사 례 명 [글리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0424 (2024.09.10.)

사실관계

요청자	U.S. Pharmatech Inc. (대리인: D and A Customs Services Inc.)	
제품	제품명	• Glycine (CAS No. 56-40-6)
	구성	•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중국산) • 염산 (한국산)
	용도	• 감미료로 사용
	완제품 HTSUS	• 2922.49.4300

제조과정



- 상세공정**
1. 중국산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magnesium bisglycinate, CAS No. 14783-68-7)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에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수용액에 한국산 염산(hydrochloric acid, CAS No. 7647-01-0)을 첨가하여 산성화되며 발생하는 화학 반응으로 글리신 생산
 3. 미국 수출

4)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판정 결과

- ☑ 글리신은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수용액에 염산을 첨가하여 발생한 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별개의 화학물질로서 원재료들과 CAS 번호가 다르고 감미료로 사용되는 등 명칭, 성질, 용도가 변화하였으므로 해당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공정을 수행한 한국이 원산지임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표시 목적상 글리신의 원산지는 한국임

Ⅱ 시사점

- 화학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경우, 단순한 혼합이 아닌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어 해당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음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0424 (2024.09.10.), <https://rulings.cbp.gov/ruling/N34042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